

[별지 제6호서식]

제29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

【담당부서명: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2. 개최일시	2026. 8. 19. ~ 8. 26.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 5명
5. 심의안건 <제69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고양시 소재 재단법인 장안사 불안당 현황】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
6. 주요내용	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 청구 내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내 사설 불안시설별 영업 상황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7. 회의결과	“기각(비공개)” - 심의위원 5명: 기각 5명

[별지 제6호서식]

제29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

【담당부서명: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2. 개최일시	2026. 8. 19. ~ 8. 26.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 5명
5. 심의안건 <제70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삼송동 000번지 토지이동결의서 및 건축허가 서류 일체】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
6. 주요내용	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 청구 내용에는 개인정보 및 법인의 건축물의 설계 및 사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7. 회의결과	“기각(비공개)” - 심의위원 5명: 기각 4명, 부분인용 1명

[별지 제6호서식]

제29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

【담당부서명: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2. 개최일시	2026. 8. 19. ~ 8. 26.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 5명
5. 심의안건 <제71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장항동 똑버스 확대 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 협의 근거자료】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
6. 주요내용	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 청구 내용 중 비공개된 사항은 버스 노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7. 회의결과	“기각(비공개)” - 심의위원 5명: 기각 5명

[별지 제6호서식]

제29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

【담당부서명: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2. 개최일시	2026. 8. 19. ~ 8. 26.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 5명
5. 심의안건 <제72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OO마을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역】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
6. 주요내용	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 청구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등을 통해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7. 회의결과	“기각(비공개)” - 심의위원 5명: 기각 5명

[별지 제6호서식]

제29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

【담당부서명: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2. 개최일시	2026. 8. 19. ~ 8. 26.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 5명
5. 심의안건 <제73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원당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관련 자료】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
6. 주요내용	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 청구 내용은 특정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유관기관 간의 내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포함된 자료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7. 회의결과	“기각(비공개)” - 심의위원 5명: 기각 5명